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건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0.

발 의 자 : 이건태 · 박지원 · 진선미
복기왕 · 김승원 · 한준호
정준호 · 이수진 · 박찬대
전용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근무성적평정, 경력평정 등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근무성적을 공정하게 평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또한, 「법원조직법」, 「검찰청법」 등 다른 법령에서는 판사나 검사의 승진이나 임용 과정에서 인성과 윤리성을 포함하는 자질평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있는 반면,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질평정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성실성, 청렴성, 친절성, 정치적 중립 의지 등 기본적인 직무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에 ‘자질평정’을 추가하고, 경찰청

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성과와 자질을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, 경찰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조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2 신설).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본문 중 “경력평정”을 “자질평정, 경력평정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근무성적 등의 평정)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, 청렴성, 친절성 및 정치적 중립 의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정기준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,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.

④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승진) ① 경찰공무원은 바 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 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, <u>경력평정</u> , 그 밖의 능력을 실증 (實證)하여 승진임용한다. 다만,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 용할 수 있다.	제15조(승진) ① ----- ----- ----- <u>자질평정, 경력평정</u>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② ~ ④ (현행과 같음) <u>제20조의2(근무성적 등의 평정)</u> ① <u>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 장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 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 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 여야 한다.</u> ② <u>제1항에 따른 자질 평정기 준에는 성실성, 청렴성, 친절성 및 정치적 중립 의지 등이 포 함되어야 한다.</u> ③ <u>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 장은 제1항에 따른 평정기준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평정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,</u>

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
다.

④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
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령으로 정한다.